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14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㊞

2016년 5월 23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제2호나목 중 (9) 및 (10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종 목	단위	금 액	비 고
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			
		20,000원	
(9)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	1건	30,000원	
가) 개인인 공인중개사	1건	10,000원	
나) 법인인 공인중개사	1건		
다) 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		800원	

(10) 부동산중개사무소(분사무소) 등록증 재교부 신청	1건		

<신 · 구조문 대비표>

현 행

[별표]

수수료의 징수 대상 사무 및 금액

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 등 사항

종 목	단위	금 액	비고
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			
(9)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			
가) (생략)			
나) 법인인 공인중개사 (분사무소 설치신고)	1건	30,000원	
<신 설>			
(10)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	1건	800원	

개 정 안

[별표]

수수료의 징수 대상 사무 및 금액

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 등 사항

종 목	단위	금 액	비고
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			
(9)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			
가) (현행과 같음)			
나) 법인인 공인중개사	1건	30,000원	
다) 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	1건	10,000원	
(10) 부동산중개사무소(분사무소) 등록증 재교부 신청	1건	800원	